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7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 허용(김영진의원안, 정부안)	2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7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1.

(3) 회 부 일 : 2025.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 허용(김영진 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공제대상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근로자 - <신 설> ○ (월세액 적용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1.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배율 이하일 것 가.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 (공제대상자) - (현행과 동일) - <u>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u> : 월세액 적용요건을 충족할 것 :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월세액 등 적용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 (시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 (주택가격) 임차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시행령 규정사항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일반 공제대상자</td><td>15%</td></tr> <tr> <td> -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 ※<신설> </td><td>17%</td></tr> </tbody> </table> ○ (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율		일반 공제대상자	15%	-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 ※<신설>	17%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세대주 및 배우자 합산 연간 월세액 <u>1,000만원</u> ○ 시행일 : 2026. 1. 1.
공제율							
일반 공제대상자	15%						
-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 ※<신설>	17%						

* 김영진의원안 2025.8.21. 발의 (의안번호 12277),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를 합산하여 연간 월세액 1,000만원의 범위에서 각각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최근 주된 거주지를 달리하는 맞벌이 부부(주말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¹⁾,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지속적인

1) 맞벌이 중 비동거가구(%): ('20)10.9 ('21)12.8 ('22)12.3 ('23)13.3 ('24)14.1,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이전, 성 역할 구분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있음.²⁾ 특히 비동거 부부의 상당수는 직장의 이전, 전근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업무 종사지에 불가피하게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임차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비동거 맞벌이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월세 방식으로 각각 거주 장소를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대 당 1인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결혼이 세법상 불리하게 적용되는 구조임.

따라서 한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동거 맞벌이 부부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세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비동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월세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2) “여보 다음주에 만나요”...맞벌이 8쌍중 1쌍 주말 부부, 매일경제, 2022. 6. 24.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주택의 범위 또한 법률에 대략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즉, 개정안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입법권을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국회가 통제해야 할 조세지출의 범위와 배분이 행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형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시행령은 ‘월세액’ 뿐만 아니라 ‘주택·토지의 규모·부속토지의 조건·주소 일치 요건·계약 당사자 요건’ 등 주택의 형태도 이미 설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의 규정방식이 적정한지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³⁾

3)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서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고, ② 법률상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③ 전문적·기술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하므로 현행 대통령령의 규정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은 해당 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을 뿐, 공제의 핵심사항인 ‘공제요건’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② 법률에서 적용요건인 ‘월세액’을 정하라고 위임했음에도, 시행령에서 적용요건으로 ‘주택·토지의 규모·부속토지의 조건·주소 일치 요건·계약 당사자 요건’등을 정할 것이라고는 법률 문언만으로 대강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②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토지의 규모·부속토지의 조건·주소 일치 요건·계약 당사자 요건’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핵심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현행법의 위임형식 및 현행 대통령령의 규정방식]

「조특법」 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1.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u>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u> 2. <u>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배율 이하일 것</u> 가.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u>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같을 것</u>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둘째, 개정안은 배우자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요건으로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기만 하면 지역적 이격 없이 근거리에 거주하더라도 개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근거리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동거에 준하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비동거부부로서 개정안의 수혜를 받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구 이외 지역에 거주요건”, “이격거리 기준” 등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⁴⁾

□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른 경우,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448억원(연평균 112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4)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을 것”, “배우자, 세대주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 등과 같은 요건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는 입장임.

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정부안	△112	△112	△112	△112	△448	△112

문 의 처

02)6788-5149